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
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96
----------	-----

2024. 10. 18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
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방무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충청권 4개 시도(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)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3조)
-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(안 제4조,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충청권 4개 시·도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초광역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⁸⁾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제2항⁹⁾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- 조례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.

	조항	규정내용(조 제목)
총칙규정	제1조	목적
	제2조	정의
실체규정	제3조	특별회계의 설치
	제4조	세입
	제5조	세출
	제6조	준용
부칙규정	부칙	시행일

- 8)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(설치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구성 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9)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(경비의 부담)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,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-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운영비 분담금” 과 “사업비 분담금”에 대해 정의함.
-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한 것임.
 - 특별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해야 하는 바 타당함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<조례안>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
3. 그 밖의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비 분담금
2. 사업비 분담금
3.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
4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5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-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- 첨부된 비용추계를 보면,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5년('25~'29)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총 운영비의 25%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추계하였음.
- **가칭** 「충청광역연합 규약」 제17조제2항¹⁰⁾에 따른 운영비 균등 부담 원칙에 따라 4개 시도가 각각 25%씩을 부담한 것으로 타당함.
- 다만, 사업비의 경우에는 같은 규약 제17조제2항 후단에 '구성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'로 규정하고 있음. 이에 현재 사무의 이관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업비 산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.
- 또한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조례안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바 타당함.

10) 「충청광역연합 규약」 제17조(경비부담)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부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, 사업비 등은 구성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

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운영비 분담금”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.
2. “사업비 분담금”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도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·운영 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
3. 그 밖의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비 분담금
2. 사업비 분담금
3.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
4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5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06조(경비의 부담)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,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시·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·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**가칭** 충청광역연합 규약

제17조(경비부담)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구성단체의 분담금
2. 사용료 및 수수료
3. 사업 수입
4.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
5. 그 밖에 수입

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, 사업비 등은 구성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8조(예산·회계 등) 연합의 예산·결산 등 재무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권 4개 시도(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)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운영비 분담금(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도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)
- 사업비 분담금(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도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)

3. 관련조문

- 안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. “운영비 분담금”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.
 2. “사업비 분담금”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도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.
- 안 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운영비 분담금
 2. 사업비 분담금
 3.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
 4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 5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으로 함
-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원 승인 전으로 당초 정원 요구 규모(총 83명)로 운영비 산출 ※물가상승 및 정원 증가 미반영

-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는 4개 시도 균등 분담 원칙으로 도비 분담분 (운영비의 25%)만 산출함

나. 추계 결과 : '25년부터 향후 5년간 3,245,000천원 정도 소요

- 충청권 4개 시도 파견인력으로 구성(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)
- 사무이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추가 예상
- ※현재 이관 범위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불가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합 계	2025년 (1차년도)	2026년 (2차년도)	2027년 (3차년도)	2028년 (4차년도)	2029년 (5차년도)
합 계		3,245	649	649	649	649	649
운영비	운영비	2,300	460	460	460	460	460
	사무소 관리*	945	189	189	189	189	189

*사무소 관리비 내역 : 사무실 임차비용, 공공요금, 경비수수료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 지방세 등 세입예산으로 운영비(4개 시도 균등분담) 예산 확보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정선미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일반회계 전입금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세 출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총청권 합동추진단 운영분담금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재원 조달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	지방세	649,000	649,000	649,000	649,000	3,245,000
	세외수입	-	-	-	-	-
지방채	-	-	-	-	-	-
기 금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-	-	-	-	-	-
민간자본	-	-	-	-	-	-
해외자본	-	-	-	-	-	-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-	-	-	-	-	-